# 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17년 11월 보도자료(http://www.mohw.go.kr/front\_new/al/sal/0301ls.jsp?PAR\_MENU\_ID=048&MENU\_ID=0403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#### I

# IT 기반 미래 보건의료 법, 제도, 윤리에 대한 정책 방향 논의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11월 2일(목) 오후 1시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(원장 이영성)이 주관하는 2017년 '제3차 미래보건의료포럼'을 개최했다.
  -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미래 보건의료의 비전과 실행 방안을 정책과 연계하여 공유,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되었다.
  - 이날 포럼에서는 '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, 제도, 윤리'라는 주제로, 정보기술(IT)이 융합된 미래 보건의료와 관련한 정책 연계 방향성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.
- 먼저 특별발표로 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 빅데이터센터 김영학 센터장과 유소영 박사가 'IT 기반 미래보건의료의 법과 윤리'를 주제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과 국내 현황을 소개하고, 국내의 보건의료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.
- 이어 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 1~5분과위원회의 분과별 발제가 진행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## 〈발표 1〉 블루버튼 이니셔티브로 소비자 의료정보 주권 찾기

(윤형진 교수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)

- 보건의료정보 데이터 관련 이슈 제시.
- 의료소비자 개인의 보건의료 공유 서비스 플랫폼의 제시.
- 기대 효과
- 개인의 자기 결정권과 자율성 강화에 기반한 의료정보 공유.
- 공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예방-진단 의료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.
- 다운로드 웹사이트 구축 및 진료정보 표준화 등의 추진 전략 제시.

#### 〈발표 2〉 일차의료에서의 Population Health Management

(조비룡 교수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)

- 일차의료 및 임상예방서비스 강화의 필요성 제시.
- 우리나라에서 PHM을 위한 일차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략.
- 한국형 ACO 모델(통합적 의료 전달체계) 및 일차의료기관 모델 제시.
- 가치 기반 수가(임상예방서비스 강화, 의료정보 교류, 인센티브 등)의 제시.

#### 〈발표 3〉 ICT 국민건강관리 프로그램: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

(백남종 교수,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)

- 최신 ICT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국민 건강관리 기술/서비스의 개발.
- 건강 수명 연장, 건강 격차 해소, 국가 의료비 절감.
- ICT 국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추진 전략 제시.
- ICT 기반 만성질환 예방·관리 제도 제안.
- 인증제도, 교육제도, 인센티브 제도 등.

#### 〈발표 4〉의료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: 성능평가 및 인허가제도 관련

(서준범 교수,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)

- 의료정보 기반 개인 맞춤형 의료(혁신 기술의 현황과 전망)의 소개.
- 다양한 신기술 적용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 서비스 전망, 개발 지원 사업 제안.
-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발굴에 집중.
- 개인정보 보호 및 인허가 관리 제도 등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.

#### 〈발표 5〉의료정보의 공유와 개방: 개방형 플랫폼 구축 및 의료서비스 개발 (박래웅 교수,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)

- 다양한 오픈 플랫폼의 현황 및 문제점 소개, 추진 방향 및 기대 효과 제시.
- 임상-유전 데이터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
-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서비스 플랫폼
- 환자 참여를 위한 PHR 통합 오픈 플랫폼
- 이기종 의료기기 정보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
- Multi-modal 임상-이미지정보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
- 공공-의료기관-민간 데이터 통합을 위한 오픈 플랫폼
- 주요 주제별 발표 후 의료계·학계·언론,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IT 기반 미래 보건의료의 법, 제도, 윤리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했다.
-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행사에 앞서 축사를 통해 "현재의 보건의료 관련 법·제도는 미래 기술 발전이나 국민 요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,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"고 밝혔다.
  - 또한 "이번 포럼에서는 지금까지의 의료기술 중심 논의에서 조금 시선을 돌려 'IT' 기반 미래 보건의료의 법, 제도, 윤리' 측면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가 미래의 기술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"고 덧붙였다.
- 미래보건의료포럼\*은 저출산, 고령화 및 의료IT 융합 등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제를 도출하고 정보통신기술(ICT) 기반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, 운영하고 있다.
  - \*(미래보건의료포럼) 보건의료 분야에서 고령화·양극화·ICT 융합 등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의료계, 학계 및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, ICT 융합의료 분야 활성화 등 관련 국내외 동향 공유 및 정책 제언 등[2015년 2차례, 2016년 5차례, 2017년 분기별 1회 개최(6월, 8월, 11월, 12월 예정)].

- 올해에는 지난 5월 11일 민관 공동 협의체인 '미래보건의료포럼위원회'를 구성, 개최하였으며,
- 제1차 포럼(6. 28.)을 통해 '4차 산업혁명 시기 미래보건의료 대응 방향'이라는 주제로 '보건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ICT의 활용', '참여자 중심의 국민 건강관리 서비스' 등 미래 보건의료의 유망 분야와 관련 쟁점을 논의한 바 있다.
- 제2차 포럼(8. 28.)에서는 '빅데이터, AI 등 지능정보시대, 환자 중심의 의료정보정책'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등 의료정보의 활용과 관련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12월 중 제4차 포럼을 개최해 그간 각 분과에서 논의해 온 과제들을 종합하고, 구체적인 사업 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.
  - \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3951,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, 2017. 11. 2.

# $\Pi$

# 한국 보건의료의 질은 전반적으로 향상, 만성질환 관리는 개선 필요

- OECD, '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' 결과 발표 -
- 2017년 11월 10일(프랑스 현지 시간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에서 발표한 회원국의 보건의료 성과(2015년 기준)에 의하면,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OECD는 '보건의료의 질(Health Care Quality Indicators)'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·분석하고 있으며,
  -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연구 협력을 통해 진료비 청구 자료를 기반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OECD에 제출한다.
- 『2017 한눈에 보는 보건(Health at a Glance)』에 수록된 이번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.
  - 우리나라는 ▲ 급성기\* 진료 및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, ▲ 특히, 뇌 졸중과 대장암(colorectal) 진료 성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며, ▲ 일차의

료 영역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.

- \* 급성심근경색증, 뇌졸중 등.
- (급성기 진료) "급성심근경색증"과 "뇌<del>졸중</del>"의 30일 치명률\*은 급성기 진료(acute care)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.
  - 먼저, 2015년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 환자의 30일 치명률\*은 3.9%로 OECD 회원국\* 중 우수한 수준이었다 (\* OECD 평균: 8.2%).
  - \* 30일 치명률: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입원 건의 비율을 의미함.

#### 【뇌졸중 30일 치명률】

(단위: %, 입원 기준)

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허혈성	5.0	4.6	4.6	4.5	4.4	4.3	4.1	3.9
출혈성	19.8	19.6	19.8	19.2	18.0	18.2	18.4	17.1

- 또한, 2009년 비교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보였던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감소\*하여 2015년에 8.1%로 줄었으며, 현재 OECD 평균(7.5%)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.
  - \* 한국: (2008) 11.3% → (2009) 10.5% → (2011) 8.7% → (2013) 8.6% → (2015) 8.1%
- (암 진료) 5년 순 생존율(Net Survival)로 본 한국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과 유방암이 각각 71.6%, 86.3%로 OECD 평균(63.0%, 85.0%)보다 높았으며.
  - 특히, 직장암의 순 생존율은 71.0%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.
- (환자 경험)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 파악을 위해 '환자의 외래 진료 경험'을 조사한 결과, '진료·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'이 있는 비율은 81.8%, '의사의 진료 시간이 충분했다'고 느끼는 비율은 77.9%로 나타났다.

- 아울러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 비율은 87.1%,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환자는 81.7%로 조사되었다.
  - ※ 조사 방법과 응답률 등 국가별로 산출 방법이 상이하여 국가 간 직접 비교 및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되며, 한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'국민건강영양조사'에서 외래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관련 문항을 조사함.
- (외래 약제 처방¹) 외래 약제 처방을 통한 의료의 질은 ① 항생제 사용량 ② 당뇨병 환자 약제 ③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로 파악하다.
  - (① 항생제) 2015년 한국의 외래 항생제 사용량은 24.3 DDD\*/1,000명/일\*\*로,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  -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퀴놀론과 세팔로스포린 항생제는 8.6 DDD/1,000명/일을 사용하여 전체 항생제의 35.4%를 차지하였으며, 이는 OECD 평균(3.5 DDD/1,000명/일)보다 높은 수준이다.
      - \* DDD(Defined Daily Dose):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.
      - \*\* 하루에 인구 1000명당 24.3DDD를 처방받았다는 의미.

#### 【항생제 사용량】

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항생제 총처방량(1,000명당 1일 DDD)	22.7	23.4	23.4	24.4	24.3
퀴놀론과 세팔로스포린 항생제 비중(%)	35.8	36.5	36.4	35.9	35.4

- (② 당뇨병)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진료 지침에서는 지질저하게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, 2015년 한국의 처방률은 61.3%로,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.
  - 또한, 고혈압 동반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<sup>2)</sup>의 처방률도 2015년 79.9%로 늘어나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수준이 계속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(③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) 65세 이상 인구 중 최면진정제 종류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

<sup>1)</sup> OECD의 '일차의료' 정의 변경에 의해 산출 대상 기준이 '의원과 보건기관 외래'에서 2017년 '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'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항생제 사용량,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장기 처방 등 양(volume)과 관련된 지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.

장기간\*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명당 10.0명으로 OECD 평균(24.8명)보다 14.8명 낮았다(\* 연간 365 DDD 초과).

- \* 65세 이상 환자가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인지장애, 낙상, 대퇴부 골절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가급적 처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.
- 반면, 벤조다이아제핀계 중 장기 작용(long-acting) 약물\*을 처방받은 환자는 인구 1000 명당 192.0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(63.7명)보다 높았다.
  - \*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.
- 이는 한 해 동안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매일 복용하도록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 비율은 낮지만, 장기 작용(long-acting)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이라도 처방받은 비율은 높음을 의미하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.

#### 【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장기 처방 】

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
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장기처방(1000명당)	9.5	9.8	10.1	10.0	10.0
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처방(1000명당)	245.6	236.3	223.2	209.2	192.0

■ (만성질환)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'천식', '만성폐색성폐질환' 및 '당뇨병'의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당 94.5명, 214.2명, 281.0명으로 모두 OECD 평균\*보다 높았다.

[\* 인구 10만 명당 (천식) 46.7명, (만성폐색성폐질환) 189.8명, (당뇨병) 137.2명]

- 이 같은 질환들로 인한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료 단계의 관리 소홀로 질병이 악화되었 거나, 결국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 화할 필요가 있다.
- (패혈증 등) 환자 안전과 관련한 '복부 수술 후 패혈증 발생률'은 퇴원 10만 건당 380.6건으로

<sup>2)</sup> 안지오텐신전환효소(angiotensin converting enzyme, ACE),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(angiotensin receptor blocker, ARB)

- OECD 회원국 중에서 발생률이 가장 낮았다.
- 한편, 조현병 환자의 남성과 여성의 초과사망비\*는 각각 4.1, 5.4로 OECD 평균(3.6, 4.7)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\* 초과사망비: 일반인구집단의 사망률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.
- (보건의료 지출)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,729 US\$PPP\*로 OECD 평균(4,003 US\$PPP)보다 낮았으며,
  -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(7.7%)도 OECD 회원국 평균(9.0%)보다 적게 나타났다.
  - \* PPP: 회원국의 물가 수준을 반영한 환율, Purchasing Power Parity.

#### 【 경상의료비 】

	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 (잠정)
국민 1인당	한국	1,976	2,048	2,159	2,252	2,396	2,535	2,729
경상의료비 (US\$ PPP)	OECD	3,226	3,342	3,455	3,632	3,734	3,848	4,003
GDP 대비	한국	6.5	6.6	6.7	6.9	7.1	7.4	7.7
경상의료비 (%)	OECD	8.8	8.7	8.8	8.9	8.9	8.9	9.0

☞ 국가 간 비교 결과는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자료 접근 범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결과 해석·인용 시에는 주의가 요구되며, 국가별 세부 산출 기준은 OECD 통계 Database(stats.oecd.org)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<sup>\*</sup>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3974, 보건복지부 정보통계담당과. 2017. 11. 13.

#### $\mathbf{III}$

####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경보 제도가 시행된다

(주의경보 이전) A 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가 환자에게 주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의 경보 시행 이전에는 A 병원 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는 있으나 B 병원에서는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A 병원의 사고 정보가 없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할 위험성이 있었음.



(주의경보 시행 이후) A 병원에서 이물질이 포함된 수액세트가 환자에게 주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, 이에 대한 주의경보를 발령하여 동일 제조사의 수액세트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에 이 내용이 전파되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에 기여함.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경보 제도\*를 마련해 올해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 - \* 환자안전법 제16조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의경보를 보건의료기관에 발령하여야 한다.
  - 환자 안전사고 주의경보(Patient Safety Alert)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 보고를 통해 수 집된 환자 안전사고를 분석해
    - 환자 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험 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해 환자 안전 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.
    - □ (발령 대상 사건 선정 기준) ① 새로운 유형의 위험 요인 등장 ②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해 가 발생 ③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가 급증한 경우 ④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 ⑤ 식약처, 중재원, 소보원,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 기관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⑥ 전문가 분석(워킹그룹, 전문가 자문단)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(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).

○ 환자 안전 주의경보 제도는 미국, 영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,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.

#### ◆ 미국, 영국, 일본 등 주요국의 환자 안전 주의경보 제도

- (미국) 민간 의료기관 인증 기구인 JC(Joint Commission)에 적신호 사건 경보(Sentinel Event Alert)를 1998년부터 운영.
- (영국) 국민건강서비스(NHS) 산하에 의료서비스 질 관리 기구인 NHS Improvement가 3단계(Warning, Resource, Directive)의 주의경보를 CAS(Central Alerting System)를 통해 제공.
- (일본)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 기구인 JCQHC(The Japan Council for Quality Health Care)에서 월 1회 정례적으로 의료안전정보지를 통해 제공.

#### ■ 이번에 시행되는 환자 안전 주의경보에는

- 주의경보의 대상이 되는 환자 안전사고의 구체적인 사례,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과 정도, 사고 위험 요인, 재발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되며
-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 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동일한 환자 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구분	주요 내용
환자 안전	(대상)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위해도가 높은 환자 안전사고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(발령
주의경보	대상 사건 선정 기준 참고).
(Patient Safety	(내용) 환자 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,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, 사고 위험 요인, 재발 방지 대책 등 제시.
Alert)	(모니터링) 주의경보 이후 환자 안전사고 재발 여부, 의료기관의 자체 점검 결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.

-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환자 안전 주의경보 체계는 선진적 환자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중요 제도로
  -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의 위험에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잠재 위험 요인을 적극 발굴하는 등 환자 안전 주의경보 체계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-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그간(2016. 7. 29.~2017. 9. 30.) 수집된 3060건의 의료기관 환자 안전사고 자율 보고 사례\*에 대해
  - \* 환자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자율 보고토록 해 관련 사례를 타 의료기관과 공유함으로 써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.
  -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, 주제별 보고서,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, 유관 단체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#### ※ 자율 보고 3060건 중 다빈도 사고 요약

- 낙상 및 약물 오류 보고가 전체의 77.7%(2379건) 차지
  - 낙상(1522건)의 경우 주 사고 장소는 병상(53.9%, 821건), 주 연령대는 60대 환자가 전체 사고의 76.1%(1159건)를 차지.
    - \* 침상에서 발생한 사고(918건) 중 침상 보조 난간이 내려져 발생한 사고(9.5%, 87건)보다 올려져 발생한 사고 비율 (12.9%, 118건)이 더 높음.
- 약물 오류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고가 다수(94.2%, 808건).
  - 약물 오류 유형은 의사의 처방 시 오류(43.8%, 375건),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 (34.2%, 293건), 약사의 조제 오류(20.1%, 172건) 순임.
    - \* 처방 오류 중 다수는 주로 용량 오류(42.4%, 159건), 중복 처방(32.3%, 121건) 등임.
  - \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3979,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. 2017. 11. 14.

### IV

# 보건복지부, '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' 운영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고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사례 등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.
  -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22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(160만 명→250만 명)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조치이다.
- 이를 위해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적정급여 TF(반장: 복지정책관)를 구성하고, 매월 한 차례 이상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.
  - 현행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금융재산, 자동차 등 소득·재산 정보 연계 확대, 연계 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, 이를 위해 관계 정부 부처, 금융기관 등 정보 보유 기관과의 협의도 할 예정이다.
- 최근 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 또는 의료급여 과다 이용 등의 사례가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.
  - 경찰 수사 중인 특정 수급자의 경우 기부금을 자녀 의료비로 모집하고도 호화 생활에 유용하고. 이를 숨긴 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.
  - 한편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하는 제도로 빈곤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인부담 인하\*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.
    - \* 치매·아동(입원) 본인부담 인하(2017년 10월), 노인 틀니 본인부담 인하(2017년 11월), 본인부담 상한 인하(2018년 1월 예정).
    - 그러나 일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의료를 이용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제도 개선 등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.

#### ※ (참고) 과다 의료급여 이용 관련 사례

- 1회용 인공점안제를 2016년도 기준 연간 총 1만 7천 관 이상 처방·조제받은 사례(2017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).
- 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·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건수 비율(경증질환자의 총외래 진료 건수 대비): 의료급여 8.0% 대 건강보험 5.4%
- 요양병원 의료급여 입원자 중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입원 환자 현황: 2014년 1만 명 → 2015년 1만 2000명 → 2016년 1만 3000명
- 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"2017년 8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'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' 및 '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' 등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축소 및 국 가최저선(national minimum) 보장,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 부담 경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"
  - "기초생활 수급자도 제도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이 급여를 받도록 노력할 의무(mutual obligation)가 있으므로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(11~12월)와 연계하여 일정기준 이상 다주택·고액 금융재산·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 통념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를 전수 조사하고"
  - "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 입원 사례관리 강화, 의약품 과다 투약 관리 강화, 연장 승인 미신청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 부과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\*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「알림-보도자료」, 13985,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·기초의료보장과·복지정보운영과, 2017. 11. 15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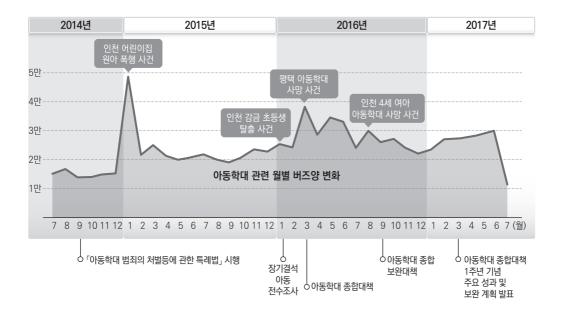
# 빅데이터와 통계로 보는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인식

V

- ① 2014년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엄연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됨.
- ② 욕설이나 협박, 위협 등의 정서학대와 방임도 명백한 학대라는 사회적 인식이 증가함.
- ③ 2015년도에 체벌이 금지되었음에도 국민들은 훈육 목적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속한 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.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한세대 홍문기 교수팀과 함께 소셜 빅데이터를 통해 최근 3년간(2014. 7.~2017. 7.)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분석했다.
  - '폭력', '학대', '범죄' 등 60여 개 키워드가 네이버, 다음에 게재된 웹문서, 미즈넷, 82cook 게 시글 등에서 얼마나 언급되고 있는지를 토대로 누리꾼의 아동학대 인식을 살폈다.
- 빅데이터를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온라인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버즈양\*은 아동학대 신고 추이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.
    - \* 버즈양: 아동학대 관련 검색 키워드 표본을 바탕으로 수집된 웹문서 총량. 아동학대와 관련한 유의미한 단어 150여 개 중 50위권 내 단어를 상위권으로 분석.
    - 또한, 아동학대 관련 사건과 이슈가 발생할 때 버즈양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      - \* (주요 사건) 인천 어린이집 원아 폭행 사건(2015년 12월), 인천 감금 초등학생 탈출 사건(2016년 1월), 평택 아동학대 사망 사건 (2016년 3월) 등.

(주요 정책)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정(2014년 9월), 아동학대 종합대책 발표(2016년 3월, 9월) 등.

○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장 잘 보여 주는 키워드는 '범죄'로, 버즈양이 2015년 후 급 상승하여 2016년부터 상위권으로 등극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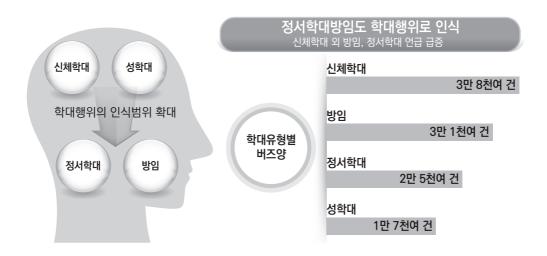
- 즉, 아동학대가 '가족 간의 문제'에서 '사회문제(범죄)'로 인식되는 경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.

# 아동학대는 '가족 간의 문제'가 아닌 '사회문제'



○ 학대 유형별 버즈양에서는 여전히 신체학대가 가장 많았으나\* 2016년의 경우 정서학대, 방임 의 버즈양이 2014년도보다 2~3배 증가했다.

- 즉,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  - \* 신체학대(3만 8천여 건) 〉 방임(3만 1천여 건) 〉 정서학대(2만 5천여 건) 〉 성학대(1만 7천여 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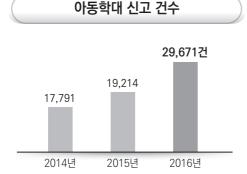


- '훈육 목적의 체벌'과 관련된 상위 키워드는 부모, 엄마, 학교, 가르치다 등의 단어만 나타났을 뿐 폭력, 범죄 등 아동학대 관련 키워드는 나타나지 않았다.
  -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 법으로 금지\*되었음에도 우리 사회가 아직은 '훈육을 위한 체벌'에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    - \*「아동복지법」 제5조 제2항: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금지(2014년 9월 개정).
- 양육 관련 키워드 분석에서는 상위 20위권 안팎으로 꾸준하게 "어렵다", "스트레스" 등의 단어가 높은 반도로 나타났다.
  - 이로써 양육 스트레스의 해소와 올바른 양육 방법에 대한 교육이 아동학대 해결의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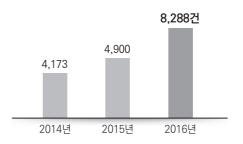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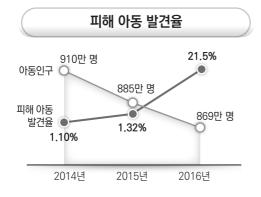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였다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『201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』의 지표에서도 확인된다.
  -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2014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\*된 2016년에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전년 대비 각각 36.1%, 54.4%로 증가하여 어느 해보다 증가 폭이 컸으며.
    - \* 범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신고의무자 확대 등 제도 강화.
    -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수 역시 2014년도를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여 특히 2014년과 2016년에는 증가 폭이 40~60%에 이르렀다.
  - 신고의무자\*의 신고의식 향상에 따라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도 2014년 17.6%, 2015년 12.4%, 2016년 69.1%로 연평균 33% 정도 늘어났으며, 2016년에는 최고 상승 폭을 기록\*\* 했다.
    - \* 아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24개 직군으로서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의무를 가진 직군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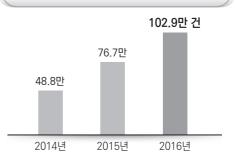
#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



-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각각 연평균 10%, 62%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아동학대 발견율\* 또한 유사한 추세로 증가했다.
  - 이는 대응 인프라 확충을 통해 피해 아동 및 관련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.
    - \* 아동인구 1천 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수, (2014) 1.1‰→ (2015) 1.32‰ → (2016) 2.15‰
- 상담원·경찰·공무원의 현장 출동, 응급 조치도 2014년보다 각각 연평균 37%, 216% 증가한 점으로 보아 아동학대에 공권력 개입의 정도 역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.
- 학대 피해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·교육 건수도 2014년 대비 연평균 50.7% 증가했다.
  - 즉,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 및 지원 조치도 한층 강화됐음을 보여 준다.



## 피해 아동 및 가정의 상담 · 치료



- 복지부 변효순 아동학대대응팀장은 "최근 3년간 빅데이터와 아동학대 현황을 볼 때 아동학대를 범죄로 보는 국민의 인식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"고 강조했다.
  - 더불어 "체벌은 훈육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정서학대, 방임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 또한 학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확고하게 인식하도록
    - 공익광고, 릴레인 캠페인 등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      - \*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 ,, 14011,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팀,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, 2017. 11. 23.

 $\mathbf{V}$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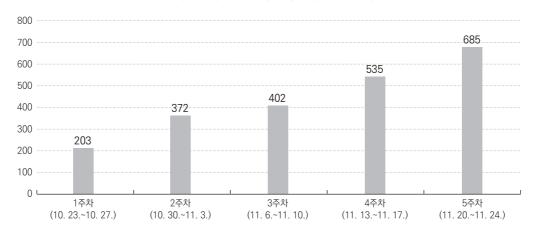
#### 연명의료 시범사업 중간 결과 발표

- 시범사업 1달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, 연명의료계획서 11건,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7건(11, 24, 기준) -
- 연명의료결정법 본격 시행(2018년 2월 4일)을 앞두고 연명의료 교육·홍보·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 준비에 만전 -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2018년 2월 4일 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연명의료결정법')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연명의료 시범 사업 추진 및 법률 개정, 교육·홍보·시스템 구축 등 제반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연명의료 시범사업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△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· 작성·등록(5개 기관), △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(10개 기관) 등 2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·실시 되고 있으며,
  - 10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리기관 통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.
  - 시범사업에는 「연명의료결정법」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 윤리정책연구원(원장: 이윤성)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.
- 시범사업 점검 결과. 11월 24일 18시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,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

보고되었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이행을 포함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(유보 또는 중단) 7 건이 발생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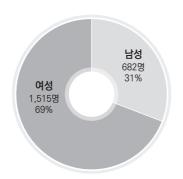
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 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돌파하였고,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 역시 확연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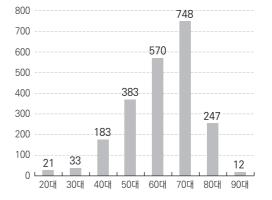
〈주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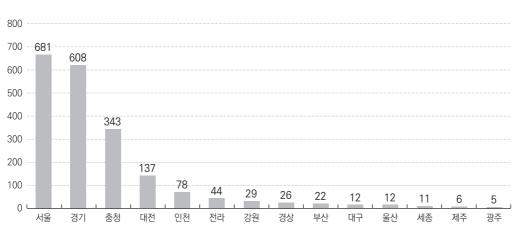
#### 〈성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〉

〈연령대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〉





○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, 70대에서 가장 많았다. 지역 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, 경기, 충청, 대전 순으로 많았다.



〈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〉

- 이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는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고, 지역 보건소 및 공공 기관 참여를 독려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- 연명의료계획서는 총 11건이 작성되었고, 성별로는 남성 7건, 여성 4건이었으며,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. 모두 말기환자에 대해 작성되었으며, 이들 중 10명이 암 환자였고,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가 1명 있었다.
  -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은 총 7건이 이루어졌으며,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,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, 환자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으로,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.
  - 참고로,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으로 불리는 대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다 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▲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고, ▲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함에 따라, 본 시범사업의 범위에서 환자 가족 전원 합의에 따른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은 제외되었다.
  -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~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였으며, 한 번 상담 시마다 짧게는 30분,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되었다고 밝혔다.

-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1월 15일 이후부터 내년 2월 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 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.
  - 2018년 2월 4일 이후 등록기관과 의료기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 말경 사전 지정할 예정이며.
  - 해당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계 획이다.
  - 다만,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.
- 한편,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연명의료결정법상 개정 필요 사항을 심의· 의결하고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.
  - 위원회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은 의료계, 종교계를 포함하여 사회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반영하여 검토되었으며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  - ▶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.
  - ▶ 말기·임종기 환자뿐 아니라 수개월 이내에 임종 과정에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.
  - ▶ 말기환자 진단 후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제공받고 있는 환자에 한하여 담당 의사 1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허용.
  - ▶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한 자에 대한 처벌 1년 유예.
  - ▶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련 기록에 전자문서 포함.
  - ▶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주체에 담당 의사 및 전문의를 추가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사업을 연명의료 뿐 아니라 호스피스로 확대.
  - ▶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에서 보관 방법 제외.
  -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, 종교계, 유리계, 법조계, 환자단체 및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

협의 기구로서,

- 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,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는 연명의료 정보 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2018년 2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.
  - 다만, 시스템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과 의료기관 윤리위원회\* 등록 기능은 1월 말 먼저 운영하여, 법 시행과 동시에 해당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전 지정을 진행할 계획이다.
  -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만큼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이며,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를 구축하고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예정이다.
- 또한, 12월 중에는 의료기관 및 (예비)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 업무 수행 절차 등에 관한 전국 단위 교육을 실시하고.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.
- 마지막으로, 연명의료결정법 및 연명의료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.

<sup>\*</sup>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, 140,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,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, 2017. 11. 29.